

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
----------	---

제안연월일 : 2026. 6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동의 받는다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-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제2항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
 - 「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6조 제1항(생활폐기물 처리)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(사무대상)
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(의회의 동의)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대형폐기물 처리
 - 우리군에서 매년 발생(사업장폐기물 제외)하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약 2,100톤 처리
- ※ 대형폐기물 :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, 가전제품,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 빼기어플 또는 읍·면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 후 배출

라.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황

-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(미탄면 창리)
 - 2006년 준공, 2021년 사용종료
- 강릉·평창 폐기물처리시설(강릉시 강동면 임곡리)
 - 2022년 준공, 현재까지 공동운영 중
- 관내, 대형폐기물 처리 가능업체 현황
 - 행운환경(평창읍), 윤원환경(평창읍), 이화산업(용평면), 대관령산업(대관령면)

마. 민간위탁기간

- 1년 기간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
 - 읍면 환경미화원(직영)이 주민들이 배출한 대형폐기물을 처리업체까지 운송, 처리 업체에서는 파쇄 등 중간재활용 처리

바. 수탁자 선정방식(제8조 준용, 공개모집 의무)

- 매년 용역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후 수행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 예산 : 600,000천원('26년 기준)
 - 대형폐기물 처리비 : 2,110톤 x 284,290원 = 600,000천원
- ※ 산출근거 : 대형 폐기물 처리 원가산정용역(2024.9.)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(제4조의2)

- 평창군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에 따른 자체 처리 불가능
- 강릉·평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형 폐기물을 지자체별 각각 위탁처리하기로 협의된 사항임

- 자체처리시설이 없는 현 상황에서 주민불편 최소화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민간위탁방식이 가장 타당하고 적정함

자.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(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)

- 해당사항 없음

차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 발췌

☐ 폐기물관리법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②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☐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

제6조(생활폐기물 처리)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폐기물처리업자"라 한다)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☐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

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·검사·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.

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아동, 청소년, 노숙인 등 복지시설
2. 환경기초시설
3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
4. 공원·녹지시설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등 관련 시설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
8.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